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서식] <개정 2025. 3. 21.>

사업 연도	. . . ~ . . .	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	법인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대손충당금조정

	① 채권잔액 (㉑란의 금액)	② 설정률			③ 한도액 (①×②)	회사계상액			⑦ 한도초과액 (⑥－③)
						④ 당기 계상액	⑤ 보충액	⑥ 계	
손금 산입액 조정		(ㄱ) 1/100 ( )	(ㄴ) 대손 실적률 ( )	(ㄷ)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( )					

	⑧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⑨ 기중 충당금 환입액	⑩ 충당금 부인 누계액	⑪ 당기 대손금 상계액 (㉗의 금액)	⑫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	⑬ 환입할 금액 (⑧－⑨－⑩－⑪－⑫)	⑭ 회사 환입액	⑮ 과소환입·과다환입 (△) (⑬－⑭)
익금 산입액 조정								

	⑯ 계정과목	⑰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⑲ 합계 (⑰＋⑱)	⑳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	㉑ 채권잔액 (⑲－⑳)	비 고
채 권 잔 액							
	계						

2. 대손금조정

㉒ 일자	㉓ 계정 과목	㉔ 채권 명세	㉕ 대손 사유	㉖ 금액	대손충당금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 고
					㉗ 계	㉘ 시인액	㉙ 부인액	㉚ 계	㉛ 시인액	㉜ 부인액	
계											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

㉝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	익금에 산입할 금액			㊲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(㉝－㊱)	비 고
	㉞ 「법인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in(③,⑥)	㉟ 「법인세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 Max[0, (⑧－⑩－⑪)]	㊱ 차액 Min[㉝, Max(0,㉞－㉟)]		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

손금 산입액 조 정	㊳ 채권 잔액 (㊾란의 금액)	㊴ 순자산 장부가액	㊵ 손금 산입률	㊶ 한도액 [(㊳-㊴)×㊵]	회사계상액			㊺ 한도초과액 (㊹-㊶)
					㊷ 당기 계상액	㊸ 보충액	㊹ 계	
익금 산입액 조 정	㊻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	㊼ 기중 충당금 환입액	㊽ 충당금 부인 누계액	㊾ 당기 대손금 상계액 (㊺란의 금액)	㊿ 당기 설정충당금 보충액	(51) 환입할 금액 (㊻-㊼-㊽-㊾-㊿)	(52) 회사 환입액	(53) 과소환입·과다환입(△) ((51)-(52))

관련 채권 잔액	(54) 계정과목	(55) 채권잔액의 장부가액	(56)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	(57) 합계 ((55)+(56))	(58) 충당금 설정제외 채권	(59) 채권잔액 ((57)-(58))	비고
	계						

5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 조정

(60) 일자	(61) 계정 과목	(62) 채권 명세	(63) 대손 사유	(64) 금액	대손충당금상계액			당기 손비계상액			비고
					(65) 계	(66) 시인액	(67) 부인액	(68) 계	(69) 시인액	(70) 부인액	
계											

작 성 방 법

1. 대손충당금 조정

가. ① 채권잔액란: ㉑ 채권잔액란 중 '계란'에 적힌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(「법인세법」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은 제외합니다)으로 합니다.

나. ② 설정률란: (ㄱ) 1/100과 (ㄴ) 대손실적률($\frac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과 ㉛의 금액}}{\text{직전사업연도의 ①의 금액}}$) 중 큰 비율에 해당하는 란에 그 비율을 적습니다. 다만,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(ㄱ) 1/100, (ㄴ) 대손실적률 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(ㄷ)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중 큰 비율에 해당하는 란에 그 비율을 적습니다.

다. ⑤ 보충액란 및 ⑫ 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: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라. ⑪ 당기대손금 상계액란: 대손충당금상계액란 중 ㉗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
마. ⑱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: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
2. 대손금조정

가. ㉖ 금액란: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습니다.

나. ㉙ 부인액란: 부당상계액을 적습니다.

다. ㉜ 부인액란: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.

라. ⑦란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란이 과소환입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며, ⑮란이 과다환입액(△)인 경우에는 ⑩란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합니다.

마.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㉙란의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, 당기손비계상액 중 ㉜란의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.

3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

㉝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부터 ㉟ 상계 후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금액란까지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) 법인만 작성합니다.

4.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

가. ㊳ 채권 잔액란: ㊾ 채권 잔액란 중 '계란'에 적힌 금액을 적되, 그 금액은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잔액을 적습니다.

나. ㊵ 손금산입률란: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적고,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을 적습니다.

다. ㊶ 한도액란: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㊳ 채권 잔액에서 ㊴ 순자산 장부가액(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,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)을 뺀 금액에 ㊵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.